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34.9”를 “27.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4.9”를 “27.9”로 한다.

제5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중 “34.9”를 “27.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4.9”를 각각 “27.9”로 한다.

제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1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자율의 제한)</p> <p>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u>34.9</u>를 말한다.</p> <p>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u>34.9</u>를 단리로 환산한다.</p> <p>④ (생략)</p> <p>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u>34.9</u>를 말한다.</p> <p>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u>34.9</u>를 단리로 환산한다.</p> <p>③ (생략)</p> <p>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u>34.9</u>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5조(이자율의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② ----- ----- --- <u>27.9</u>-----.</p> <p>③ ----- ----- ----- <u>27.9</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 ----- ----- <u>27.9</u>-----.</p> <p>② ----- ----- ----- <u>27.9</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27.9</u>-----.</p>

1.·2. (생략)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2156-9475